학업중단숙려제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

2023.5.8.(월)14:00

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김은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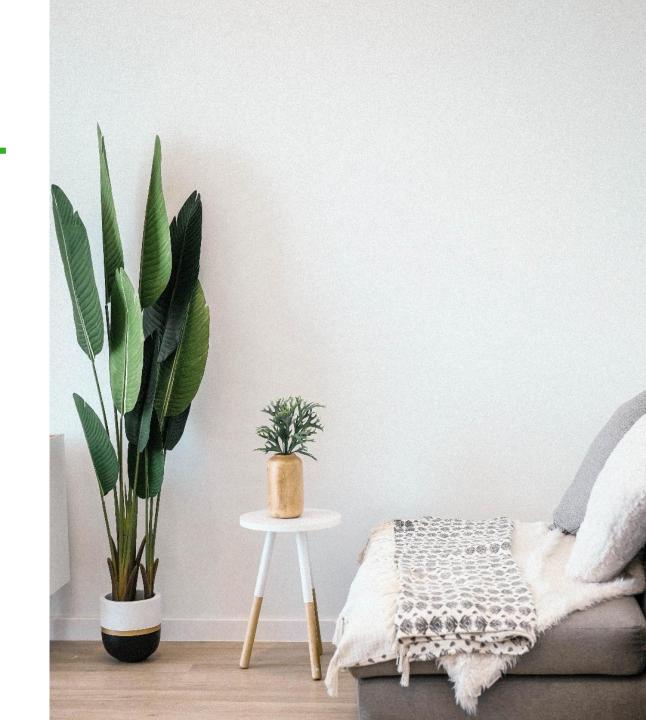
목차

01 학업중단숙려제

⁰² 학업중단숙려제 **Q&A**

03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

04 대안교육지원센터





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

「최소 1주에서 최대 7주」까지

숙려의 기회를 부여하여

상담, 진로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

<mark>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</mark>을 예방하는 제도

근거

초.중등교육법 제28조

제28조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) ⑥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<mark>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</mark>.

근거

초.중등교육법 제28조

제28조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) ⑥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(<mark>학교규칙의 기재</mark>사항 등)

- ①법 제8조에 따른 <mark>학교의 학교규칙</mark>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mark>기재해야 한다</mark>.
- 7. 학생 포상, 징계,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, <mark>학업중단 예방</mark> 및 학교 내 교육·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

목적

- ●학업중단 위기 학생 조기 발견을 통한 <mark>학업중단 사전</mark> 예방
- ●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등 <mark>적극적인 개입</mark>으 로 학교 적응력 증진 도모
- ●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<mark>다양한 프로그램 등 숙려의</mark>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<mark>신중한 고민 없이</mark> 성급하게 <mark>이루</mark> 어지는 학업중단 예방

학교장

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운영

- <mark>학년 초</mark> 단위학교에서는 <mark>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</mark> 구성하여 <mark>학업중단숙려</mark> 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협업체계를 구축
- 교감, 부장교사(교무,학생,학년), 진로진학상담교사, 전문상담(교)사 등 학교의 규모 및 상황에 맞게 5~7명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
- 유사 기능의 학교 내 <mark>타 위원회와 통합운영 가능</mark>

학업중단숙려제 대상 학생

- <mark>학업중단 의사를 밝힌</mark> 초·중·고 학생
-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된 학생
- ✓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
- ✓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
- ✓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
- ✓ 그 밖에 학생 관찰,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돼 숙려제 참여 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

참고: 검정고시: 매년 4월과 8월에 실시되며, 2월과 6월에 접수

중학교-공고일 전날까지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,

고등학교-자퇴 후 공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되어야 검정고시 응시 가능

학업중단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 학생

- 연락두절, 행방 불명 등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
- **질병치료, 발육부진, 사고, 해외 출국(유학, 이민), 미인정 유학** 등으로 학업 중단 학생
- **학교폭력, 학교규칙 위반** 등 으로 출석 정지되어 **미인정결석**으로 처리된 학생
- 학교폭력,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**퇴학**하게 된 학생
- 2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이후 중학교 3학년 학생 (단,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은 적용 가능)
-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거나(대학 수시합격 등)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

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간

최소 1주 ~ 최대 7주까지(주 단위 운영)

화요일 시작 ---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

- 처음: 1주(7일) ~ 최대 2주(14일)까지 부여
- 연장은 최대 7주까지
- 연장할 경우에도,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열고 내부 결재를 득하여 실시
- 당해 학년도에 해당 학생에 대한 숙려제 운영 횟수는 최대 2회 ✓2회 초과 시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횟수 조정 가능

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간

최소 1주 ~ 최대 7주까지(주 단위 운영)

- 주말, 공휴일, 휴업일 방학 기간 포함(단 평가 기간 제외)
- '정기고사 기간 ' 을 피하여 숙려 기회 부여
- 숙려 기간 중간에 평가가 있을 경우, 평가 기간 전후를 연결하여 숙려 횟수 1회로 처리
- 최초, 최종 상담일 등 숙려기간의 개시, 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
- 자퇴(유예)원을 제출한 경우 반려한 후 숙려제 적용
- ✔ 숙려제 후 학업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자퇴(유예)원을 다시 제출

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출결 관리

운영기간 (프로그램)	인정 기준	세부 내용		
1주 ~ 2주 (상담)	주 2회 이상	 주 2회 상담으로 해당 주 출석 인정(1시간 1회 처리) 담임교사 수시 상담은 해당되지 않음 (운영) 학교, 교육청(Wee센터)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		
2주 이후 (선택 프로그램)	주 2회 이상	 ○ 주 2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해당 주 출석 인정(2시간 1회 처리) ○ (운영) 학교, 지역 내 유관기관, 학교장 인정기관 등 ※ 상담활동이 더 필요할 경우 상담활동으로 편성 가능 → 출석인정기준은 선택프로그램과 동일(2시간 1회 인정) 		

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은 어디서?

숙려제 운영은 어디서?

- ▶ 단위학교: 위(Wee)클래스 권장
- ➤ 교육지원청 <mark>위(Wee)센터</mark>
- ▶ 지역연계 정서함양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기관:도교육청 지정 기관 (18개 기관)
- 지역사회 유관 전문기관: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
-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: 여행, 인성 및 진로캠프, 전문 심리 상담, 예체능 체험, 직업체험 등
- ▶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(18개 기관)

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은 어디서?

위기 원인	프로그램	프로그램 운영 기관	
심리정신	심리상담치료	학교Wee클래스, Wee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상담기관	
가정경제	복지지원	학교(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)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, 지역아동센터 등	
학업진로	기초학력증진	학교, 지역교육지원청 등	
	진로상담	학교Wee클래스, Wee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, 진로센터등	
	진로직업체험	학교, 대학교, 기업, 기관, 개인사업장 등	
학교부적응	대안교육	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(18개 기관)	
	문화예체능활동	학교, 문화·체육시설, 청소년수련관 등	
기타	여행	학교Wee클래스(센터)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상담기관	
	기타	지역연계 정서함양 프로그램 운영기관(18개 기관),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,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,	

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기관

순	지역	기관명	순	지역	기관명
1	전주	가람통합예술연구소		군산	군산공예협동조합
2	전주	창의예술연구회		익산	둥지아동극단
3	전주	나무사랑가구		익산	모꼬지공예분화개발원
4	전주	마음상담코칭센터	13	익산	예술심리상담센터 마음길
5	전주	싹심리상담센터		익산	예품대한인재양성교육개발원
6	전주	아중리맘공동체		익산	꿈벼리늘배움협회
7	전주	움티학교		익산	문화예술공동체 치유 앤 성장
8	전주	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		정읍	내장산생태탐방원
9	전주	코시나		부안	생명평화마중길

14개 시 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



1-1 학업중단숙려제의 취지는 무엇인가요?

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의 학업중단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습니다. 성급한판단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후회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전문가의 도움으로 학업중단에 대해 신중하게 숙려할 수 있는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.

1 - 2

학업중단숙려제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나요?

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심리·정서적 요인 등으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숙려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 다만, <mark>학생 및 학부모는 숙려제 참여 여부를 선택</mark>할 수 있습니다. 숙려제 안내는 의무

2-1 초등학생도 학업중단숙려제의 대상이 되나요?

초등학생도 7일 이상 연속 결석을 하거나 누적 30일 이상의 결석을 할 경우, 또는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징후가 보이는 경우 학업중단숙려제의 대상이 됩니다.

2-2

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 관찰, 면담 등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경우, 학업중단숙려제참여를 안내해도 되나요?

교사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면 학업중단숙려제를 참여할 수 있도록 <mark>안내할 수 있습니다</mark>. 다만, 상담 등의 과정에서 <mark>학업중단 위기학생이라고 학생에게</mark> 단정적으로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. 아울러 이러한 학생을 발견하면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와 협의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.

2-3

검정고시를 보겠다며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하 였으나 학생이 수용하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검정고시 사유로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라도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하여 안내해야 합니다. 학생이 숙려제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, 부록
 [서식2]의 숙려제 안내에는 '예'에 체크하고, 참여 여부에는 '아니오'에 체크하도록 하여 미신청으로 처리합니다.
- 해당 서식은 자퇴원과 함께 학교장 결재를 통해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. 아울러, 학생에게 *검정고시* 이후 일정 등을 안내해 줍니다.

2-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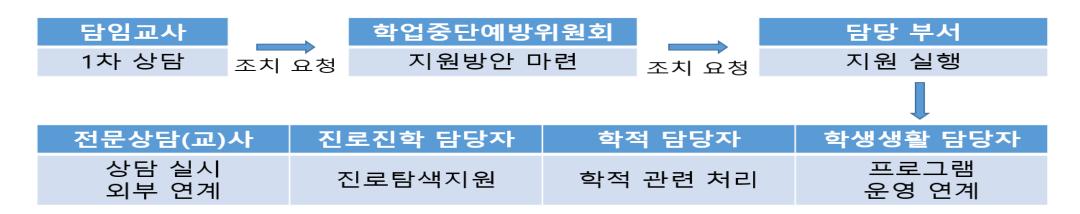
학업중단숙려제 제외 대상 학생에게도 숙려제를 안내해야 하나요?

-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 학생의 경우, 사유에 따라 증빙 서류(질병 및 해외 출국 등)를 제출하므로 <mark>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 안내</mark>하고 <mark>미신청서를 받아 학교에 보관</mark>하면 됩니다.
- 다만,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 학생이라도 학업중단을 하게 되는 경우, 학교는 반드시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학생에 한해 '학교 밖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(나이스(NEIS) 양식)'를 작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해야 합니다. 학업중단숙려제와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안내는 학교장의무사항이지만 개인정보 제공의 여부는 선택 사항입니다.

3

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?

-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는 학교 내의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입니다. 교감 및 전문상담(교)사 등 교원 5~7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합니다. 학업중단숙려제 관련 업무를 협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합니다.
- 학교 내 유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



4 - 1

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시 보호자에게 안내할 사항은 무엇인가요?

-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전, 학생에게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학업중단숙려제의 목적입니다.
- 그러므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의 대화법, 자녀 지도 방법, 학업중단 이후의 변화되는
 상황 등을 안내하고, 대화를 통해 자녀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
 안내합니다.
- 학부모에게 <mark>학업중단숙려제의 목적 및 절차</mark>, <mark>학생이 참여하게 될 프로그램</mark> 및 <mark>참여 방법, 숙려기간 중 학생의 안전관리, 상시연락체제 유지</mark>등에 대해 안내하여야 합니다.
- 또한,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함께 안내하고 학업중단 이후 복교할 수 있는 방법이나, 학생 지원 기관, 학교 밖 청소년센터 등 유관 기관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4-2

학생이 학업중단숙려제를 신청하면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나요?

네.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 중심 교육의 일환입니다. 따라서 학생마다
 운영 일정 및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습니다. 대상 학생인 경우 충분한
 대화를 통해 개인에 맞는 일정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숙려제를
 운영하여야 합니다.

4-3

타시도 학생이 우리 시도의 학업중단숙려제 유관 기관으로 학업중단숙려제 를 요청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기관의 상담 일정을 고려하여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.
 다만,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시·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기준에 맞게 운영해야 합니다.

4-3

한 학생이 학업중단숙려제를 1학년 때 7주를 사용했는데 2학년 때에도 숙려제를 참여할 수 있나요?

학업중단숙려제는 학년도 단위로 가능합니다. 따라서, 학생이 1학년 때 7주를 사용하였더라도 2학년 때 학업중단숙려제를 희망할 경우, 1주 이상 7주 이하 범위에서 학교장 결정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4-5

학업중단 숙려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?

- 학교를 계속 다니기로 한 경우
- ✓ 학교에 다시 다니면서 학생이 처한 상황과 문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학교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.
- 자퇴(유예)하기로 한 경우
- ✓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관기관 및 지원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, '학업중단 학생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동의서' 작성 후 나이스에 등록하여 정보 연계를 합니다.

5-1

학업중단숙려제 외부기관 운영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?

-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하기 전에 외부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를 합니다. 외부 기관의 상황에 따라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 가능합니다.
- 학생이 외부기관 프로그램에 불참한 경우, 그 사유를 학교 담당자가 파악하여
 프로그램을 성실히 참여하도록 독려해 주셔야 합니다.

5-2

'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'에 대해 궁금합니다.

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이란, 지역 내 학교 밖 기관 등에서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곳을 말합니다. 이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<mark>학교장이</mark>
 인정하는 기관은 모두 가능합니다.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미술이나 체육을 체험하고 싶다면 학교에서 이러한 시설이나 학원 등을 외부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.

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흐름도

대상 발생 숙려제 안내

- -학업중단 의사 표현 또 는 학업중단 징후 포착 학생
- -학생·학부모 대상 학업 중단숙려제 <mark>안내(**의무사** 항</mark>)[서식2]

숙려제 동의 숙려제 운영

- 자퇴원 반려
-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운 영 방안 결정(기간, 프로 그램 운영)
- 자체실시(내부결재)또는 외부기관의뢰(공문발송) [서식4~8]
- ☞ (1~2주차) 상담 주2회 이상
- ☞ (3~7주차) 프로그램 주2 회 이상
- -학생 안전관리 철저(학교장)

학업 지속 시

-학교적응 지원

학업중단 시

-학적 처리, 학교 복귀 절차 안내

-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 그램안내 및 NEIS(장학) 정보연계 [서식9 ~ 11]

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

전라북도교육청 누리집 → 행정정보→ 기본계획안내(447번)

학업중단숙려제 유의 사항

- 가. 장기간 출석인정을 위해 고의적으로 <mark>주말을 제외하여 숙려기간 부여 불가</mark>
- 나. <mark>숙려제는 주 단위로 운영</mark>(화요일 시작 →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)
- 다. 숙려기간 중 학생이 학업복귀를 원할 경우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통해 복귀일을 숙려기간

종료일로 함(주 단위 운영에 따른 출결 여부와 출석인정기준 확인)

학업중단숙려제 유의 사항

- 라.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시 출석인정기준, 운영일정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
- 숙려 상담 또는 프로그램 운영 일정을 사전 확인 후 공문 시행
-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에서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할 경우,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한 내 처리
- 지속적인 관리 및 연락 유지하며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

학업중단숙려제 유의 사항

- 마. 학생에 대한 숙려제 실시 대상 여부는 반드시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, 이미 결석한 기간을 소급 적용 불가
- 바. 방학기간 중 숙려제 사용 불가
- 사. 자퇴(유예)원을 제출한 경우 자퇴(유예)원을 반려한 후 숙려제 적용
- 아. 숙려제 후 학업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<mark>자퇴(유예)원을 다시 제출</mark>해야 함



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

학교부적응 또는 학업중단위기 학생의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교육함으로써 학생의 학업중단예방에 기여하고자 함

일반 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심리치유, 인성, 예술, 문화, 진로교육 등 대안교과를 운영하는 기관

• 위탁대상자 :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중·고등학교 재학생 다문화학생, 발달장애학생: 초등학생도 가능

참고 1. 2023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(24개 기관)

구분	지역	기관명	연락처	
직영	전주	대안교육지원센터	253-2269,2279	
	전주	가정형위센터	236-9801~5	
민간	전주	가람학교	224-0316	
	전주	괜찮은학교	272-4466	
	전주	명주골학교	247-8311	
	전주	민들레학교	283-1356	
	전주	선너머학교	070-4171-7734	
	전주	야호학교	281-6582	
	전주	어울림힐링학교	237-1134	
	전주	움티학교	285-4344	
	전주	이룸학교	226-8066	

구분	지역	기관명	연락처
	군산	가온누리희망틔움	070-8738- 1318
	군산	내일을여는학교	445-2013
	군산	다음세대학교	452-6326
	군산	산돌학교	446-4460
민간	익산	꿈너머꿈	838-1700
	익산	그루터기	856-1091
	정읍	녹두학교	535-9620
	남원	인농학교	625-3363
	고창	희망샘학교	562-2811

*전국단위 ※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(무주),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(용인),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(대구) , 국립해맑음센터(대전)

위탁대상자 위탁 절차

	● 위탁 대상 학생 보호자와 상담	
1)대상 선정	- 위탁절차 및 위탁교육기관 안내	
	- 교육과정 및 성적처리 출결 위탁해제조건 등 안내	
2)위탁 신청	● 위탁교육 신청서(서식1) 학부모→학교에 제출	
3)위탁 결정	●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서 학교장이 결정	
	-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위탁교육기관 선정	
4) 위탁 추천) 위탁 추천 ● 위탁학생추천서(서식2) 학교→위탁기관에 송부	

위탁대상자 위탁 절차

- 5) 수탁 통보 위탁학생 수탁 동의서(서식3) 위탁기관 → 학교로 송부
 - 위탁기관에서 학생 급식비를 요청할 수있음 학교는 급식비 위탁기관에 지급
- 6) 교육 실시 매월 출결 사항 및 특이사항(서식7) 위탁기관 → 학교로 송부
- |7) 교육 종료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 등 (서식8) 위탁기관 → 학교로 송부

위탁학생 학업성적 관리

- ■<mark>평가는 소속학교에서 실시</mark>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■지필 및 수행평가등 성적 처리 등 이 지침에 없는 사항은 소속학교 '학업성적관리위원회'에서 결정한다.

위탁학생 학적 및 출결 관리

- 위탁학생은 <mark>원적교에서 학적을 관리</mark>한다.
- 위탁교육기관은 학생 개인별 출결사항을 매 익월 5일까지 소속학 교에 통보한다.
- 소속학교는 위탁기관에서 송부해 온 출결 및 생활기록부 보조부 를 참고하여 학교 생활기록부에 입력한다.
- 여러 사유로 위탁교육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기관 은 소속학교와 협의를 거쳐 수탁을 해제 할 수 있다.(공문으로)

위탁학생 생활지도

○ 소속 학교의 진로상담부장. 생활지도부장. 위탁교육생 <mark>담당</mark>교사는 <mark>위탁교육기관을 수시로 방문</mark>하여 학생들의 출결 및 수업 상황을 점검, 격려하고, 위탁교육기관과 위탁 학생에 대한 제반 사항을 협의. 조치한다.

○ 위탁교육기관에서의 각종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원적 학교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.

○ 원적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청구한다.

http://school.jbedu.kr/dream



감사합니다 -질문 ?-

